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신**	신** 1933-05-28	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	무단전출
김**	김** 1966-12-25	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	무단전출
김**	김** 1958-01-01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52-12-2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	무단전출
최**	최** 1982-09-17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1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6-12-21	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	무단전출
전**	전** 1972-05-30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	무단전출
임**	임** 1952-06-19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	무단전출
인**	인** 1960-01-09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1길	무단전출
도**	도** 1960-09-14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59-10-11	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	무단전출
정**	정** 1959-03-16	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	무단전출
김**	김** 1981-11-11	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	무단전출
이**	이** 1950-02-16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74-02-09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	무단전출

제 201411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4월 2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장 웅 문의전화 : 02-3396-6658)

2014년 04월 15일

광희동장 인

